

# Korean Tax Update

April 2021, Issue 82

## [조세뉴스]

---

### 4 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전문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3개월)을 실시함.

###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국세청) [전문보기]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구축)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4월 22일에 개통함. 이번 개편을 통해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함.

## [판례]

---

###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 두 55329 판결(심리불속행)

- 사후부과 증여세에 관한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은 사후적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측면에서 비과세되었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 역시 그 비과세요건 위반시점, 즉 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 법규를 최초 출연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 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위 상증세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고 앞서 본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바,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2014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12.3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처분청이 원고에게 위 출연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부과 증여세 납세의무가 위 시점에 확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위반사항 또는 자격 결여에 대한 신고 및 그로 인한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보완조치라고 여겨지는 바,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 두 53699 판결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83누269),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바(대법원85누968, 대법원2002두2758),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 17 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0 서 1422, 2021. 3. 16.

- 청구법인은 판매법인 입장에서 동일국가에 소재한 제조법인은 국조법상 국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국조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단은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 간의 특수관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소재지국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업자인 판매법인의 특수관계인은 판매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때 “특수관계”는 국조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조항의 “특수관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국조법 제17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해당 국가의 명목적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조심 2014부2351), 처분청이 판매법인을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정)**

조심 2019 서 3480, 2021. 3. 18.

- 통상 소급감정은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평가시점이 달라진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부동산과 달리 쟁점상표권의 시가평가는 시장 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예측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 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도 없으므로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증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시행시기는 부칙(제25194호, 2014.2.21.) 제2조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증자분이 아닌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지 2310, 2021. 3. 22.

-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본금을 감안하지 않고 감면승인을 받은 증자금에 대하여만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내국인 투자포함) 지분도 추가로 감면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유가 실제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외국인투자 지분만큼만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금액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매 증자시마다 증자분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계속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증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지 1409, 2021. 3. 24.

- 청구법인의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당초 분할존속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계획변경인가를 받아 분할신설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하고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정리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회생계획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러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되고 청구법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회생절차종료결정을 받았던 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의 실행으로 법인이 분할되고 이를 분할된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이를 형식상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배제규정과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지 1267, 2021. 3.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배제규정과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예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에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에금에 불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5 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2021. 2. 2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에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에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8 조 제 5 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에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 3. 8.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3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는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 통합플랫폼 관련 공동경비(마케팅비용, 유지보수비, 운용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

-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2 항 제 3 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2021. 3. 22.

-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 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 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 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 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19 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 3. 30.

- 「소득세법」 제 94 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 조의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2021. 3. 30.

- 「법인세법」 제 40 조 제 1 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따라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 40 조 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